



##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선정 시행세칙

제정일	1999. 9.10
개정일	2022.12. 1
개정차수	6차
담당부서	창업보육센터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가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입주자 선정 및 입주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4.11. 1)

제 2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보육센터의 입주신청자 및 입주지정을 받고 입주중인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조 (입주대상) 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5. 6. 1)

1. 신기술 및 이를 토대로 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여기서 신기술 및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또는 통념적으로 그 자격이 인정되거나 기술분과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2. 기술집약적 산업인 경우, 구체적인 창업 업종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부대시설 및 보육시설 등이 과도하게 요구되거나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분야는 제외한다. 향후 전국적으로 많은 센터가 설립될 경우에 특성화된 기술을 가진 기업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 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4. (삭제 2014. 1. 1)
5. (삭제 2014. 1. 1)
6. (삭제 2022.12. 1)

제 4조 (입주승인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3. 외국인이 50%를 초과하는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소음·진동 등 환경 공해 다발 업종 사업자
5. (삭제 2022.12. 1)
6. 장기간 근무인원 없이 서버 등 기계류를 원격제어 운영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22.12. 1)
7. 기타 센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제 5조 (입주신청) 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보육센터 소정의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자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센터 보육실 유희공간이 발생하면 입주모집 공고하고 제3조 입주 대상 자격을 구비한 개인 및 중소기업의 입주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2. 입주지원 신청서에 의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입주 대상적격자에 한하여 2차 발표심사를 실시한다.
3. 입주기업 발표 면접심사 결과 입주기업 선정은 총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1]

제 7조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시 사업자 사업능력, 기술경쟁력, 상품경쟁력, 대학협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선정을 한다.

1. 보육센터가 특화분야를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동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다.
2. 입주 신청자가 보육센터에 입주경력이 있을 경우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
3. 보육센터는 장기복부 제대군인, 교수·연구원 창업기업, 대학(원)생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보육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숙련기술인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입주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1]

제 8조 (예비입주자선정)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 입주자의 조기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잔여 공간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 평점이 6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입주 심사 시 예비 입주자를 선정,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단, 입주 대상업체가 특정 업종으로 전문화된 경우에는 선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 9조 (입주 승인 및 통보) 보육센터에 입주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입주신청 마감일 후 1개월 이내에 입주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①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보육센터 장이 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육센터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의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의 체결 시 필요한 입주기업에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입주계약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되, 3년차에서 4-5년차로 연장되는 입주계약은 2년 단위로 할 수 있다. 단 총 입주기간은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15. 6. 1)

제11조 (입주승인 취소)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규정에 의한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규정에 의하여 보육센터와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3. 입주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승인을 받는 경우
4. 입주 전 초기 입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입주 후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5. 6. 1)

제12조 (입주연기) 입주자가 제10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입주계약자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입주계약자가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 5일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입주연기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주 부담금) 보육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예치금, 보육료, 관리비(공과금 등), LAN 사용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2022.12. 1)

1. 입주자는 입주예치금은 입주 전에 예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다.

2. 보육료는 작업장 사용료, 중앙 공급에 의한 냉난방비, 건물 영선비, 청소 및 경비 용역비 및 기타 시설에 사용된 비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2.12. 1)
3. 입주자는 전기, 전화 사용료, 수도세 등 관리비(공과금 등)와 보육료를 1개월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년차별로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4. 1. 1, 2022.12. 1)
4. (삭제 2015. 6. 1)
5. (삭제 2015. 6. 1)

제14조 (입주기간 및 기간연장) 보육센터의 입주기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심사일 기준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3. 입주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 가.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나.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다.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입주기업이 입주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매 1년마다 입주기간 만료 30일 전에 입주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기간 연장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보육센터시행세칙 제11조에 근거한 사업진행도평가 실시
  - 나. 계속보육 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해 입주연장 허가
  - 다.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입주연장계약 체결

[전문개정 2015. 6. 1, 2022.12. 1]

제15조 (운영규정준수) 입주자는 보육센터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센터장은 당해 입주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 본 입주자선정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